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1년간 한시 중단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가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증가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완화면서도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기업활동 지원" 일환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2022년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내리나...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검토

11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시 집값에서 일정 비율로 일괄 깎아주는 공제다. 보유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괄 공제하기에 중저보유자보다 고가보유자에게 유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에서는 95%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살피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일 올해 종부세 인하를 목표로 할 경우 8월 말 이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대통령이 바꿀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율조정 역할을 한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세율 변경은 국회 동의로만 바꾸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이를 국회에 환원하지 않았다.